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비교과 활동 졸업인증 운영 규정
 [시행 2024. 8. 30.] [강릉원주대학교학교규정 제2245호, 2024. 8. 30., 일부개정.]

학생성공지원과, 033-640-3039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비교과 활동 졸업인증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인재상인 해람인 양성을 위하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89조의 비교과 활동 졸업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교과 활동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인지(體仁知) 프로그램'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 '운영부서'는 체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대학교 내 부서 또는 학과(부)를 말한다.

제2장 졸업인증

제3조(인증분야) ① 비교과 활동 졸업인증(이하 "졸업인증"이라 한다) 분야는 체인지 프로그램 영역, 자격증 영역, 외국어 영역, 봉사 영역, 학술활동 영역으로 한다.

② 학생은 제1항의 영역 중에서 1개 영역 이상을 선택하여 졸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인증기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학사운영 규정 제89조제2항제7호에 의한 졸업인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단, 이로 인해 학점을 부여받거나 학과별 졸업요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체인지 프로그램 영역: 학생성공지원과에서 인정된 비교과 프로그램 20시간 이상 이수
2. 자격증 영역: 학생성공지원과에서 인정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공인된 종목의 기사자격증 취득
3. 외국어 영역: 공인된 표준외국어 능력시험에 의한다.

영 어	1. TOEIC 550점 이상 2. TOEFL(CBT 137점 이상, PBT 457점 이상, IBT 47점 이상) 3. TEPS 440점 이상 4. TOEIC-SPEAKING : 110점 이상 5. OPIc : IM1 등급 이상 6. NEW TEPS : 235점 이상
중국어	HSK(한어수평고시) 4급 이상
일본어	1. 일본어능력시험(JLPT) N3급 이상 2. JPT 450점 이상

4. 봉사 영역: 100시간 이상(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VMS) 및 자원봉사포털(1365)의 실적 확인서 제출)
5. 학술활동 영역: 전국규모 학술지급 이상 학술지 제1저자(교수 공동) 및 교신저자 논문 등재

제5조(인증절차) 비교과활동 졸업인증 받기 위해서는 최종학기 종강전까지 인증자료를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제6조(인증기한) 졸업예정자는 졸업 최종학기 졸업사정전까지 졸업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체인지 프로그램 운영

제7조(체인지 프로그램 편성) 체인지 프로그램은 이 대학교의 핵심가치인 창(創), 통(通), 기(基)를 갖춘 해람인의 6대 핵심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1. 창(創 창의도전): 창의융합 능력과 도전정신을 가진 인재가 되어 미래의 꿈을 향한 열정으로 끝없이 배우고 도전하여 성취함을 말한다.
2. 통(通 소통협력): 소통하며 공감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인재가 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통해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함을 말한다.
3. 기(基 자기주도):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인재가 되어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결정과 결과에 당당하게 책임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함을 말한다.

제8조(졸업인증 체인지 프로그램 인정) 이 대학에서 졸업인증을 위해 개설되는 모든 체인지 프로그램은 **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에 한한다. <개정 2024. 8. 30.>

제9조(운영부서의 업무) 체인지 프로그램 운영부서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인지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2. 졸업인증 가능 체인지 프로그램 인재양성통합시스템에 신청 <개정 2024. 8. 30.>
3. 체인지 프로그램 결과보고
4. 체인지 프로그램 자체 성과 분석

제10조(체인지 프로그램 운영) 운영부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인재양성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체인지 프로그램 개설을 신청하여야 하며, 학생성공지원과에서는 신청된 프로그램의 심의·승인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주관한다. <개정 2024. 8. 30.>

제11조(체인지 프로그램 인정시간) 운영부서에서 진행하는 체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체인지 프로그램 장학금) 체인지 프로그램 이수 시간이 학생성공지원과에서 정한 요건 이상을 획득한 학생에게는 우수활동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부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8. 30.>

부칙 <제02245호, 2024. 8.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